[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2002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2년 1월 12일 parkcholop@naver.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년 6월 11일

# 우마카

## 정 보 공 개 서

(주)엠티씨컴퍼니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엠티씨컴퍼니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 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 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 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 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 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15, 2층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41-681-8330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 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 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q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 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 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 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영업표지       |  |                        |         | 주 소          | :            |        |
|-----------|------------|--|------------------------|---------|--------------|--------------|--------|
|           | 우마카        |  |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15, 2층 |         |              |              |        |
| (주)엠티씨컴퍼니 | 법인 설립등기일   |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 대표팩스번호 |
|           | 2021.10.6  |  | 2021.10.12             | 박성철     | 041-681-8330 |              | -      |
|           | 법인등록번호 161 |  | 1411-0053830           | 사업자등록번호 |              | 475-87-02066 |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 11 0 01     |                 |      |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15, 2층 |              |                 |   |
| 사용인<br>(임원) | 박성철             | 우마카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급편)        |                 |      | 박성철                    | 041-681-8330 | -               |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17 B OI     | 사용인<br>(임원) 박진형 | 우마카  | 충남 서                   | 산시 해미면 한서1로  | · 15, 2층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                        | 박성철          | 041-681-8330    | -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17 B OI     |                 |      | 충남 서                   | 산시 해미면 한서1로  | <u>!</u> 15, 2층 |   |
| 사용인<br>(임원) | 하성혁             | 우마카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급권)        |                 |      | 박성철                    | 041-681-8330 | -               |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 인수ㆍ합병 여부                     | 기업명 | 영업표지 | 인수 · 합병일 | 주 소                         | 대표자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br>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 우마카 | 우마카  | 2022.4.5 |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9로<br>31-7, 102호 | 박진형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우마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우마카     | "우마카"는 "맛있다"라는 우마이의 후쿠오카 사투리입니다. 투구모양의 징기스칸불판을 사용하여 호주청정지역에서 12개월 방목 후 400일이상 곡물사료로 비육한 와규 소고기입니다. |
| 상 호      | 우마카 OO점 |  |
| 상표(서비스표) | 우마카     | 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40-1443630  |

| 광 고       |  |
|-----------|--|
| 그 밖의 영업표지 |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1년 | 9,735   | 0      | 9,735  | 0       | -345   | -264   |
| 2022년 | 95,052  | 51,903 | 43,148 | 136,821 | 37,479 | 33,413 |
| 2023년 | 118,422 | 46,026 | 72,395 | 124,619 | 32,442 | 29,246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여어ㅠ티 | 연도    |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    |    |  |
|------|-------|-------------|----|----|--|
| 영업표지 | 전포    | 매출액         | 상한 | 하한 |  |
|      | 2021년 |             |    |    |  |
| 우마카  | 2022년 | 136,821     |    |    |  |
| Ī    | 2023년 | 124,619     |    |    |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년에비          | 이름        | 현 직위 |              | 사업경력              |       |
|---------------|-----------|------|--------------|-------------------|-------|
| 원인역구          | 관련여부 이름 현 |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 박성철       | 대표이사 | 2021.10 ~ 현재 | (주)엠티씨컴퍼니<br>대표이사 | 사업 총괄 |
| 가맹사업<br>관련 임원 | 박진형       | 사내이사 | 2021.10 ~ 현재 | (주)엠티씨컴퍼니<br>사내이사 | 사업 관리 |
|               | 하성혁       | 사내이사 | 2021.10 ~ 현재 | (주)엠티씨컴퍼니<br>사내이사 | 사업 관리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IJ저           | 임원: | 수(명) | 지의스/며\ |  |
|---------------|-----|------|--------|--|
| 시점            | 상근  | 비상근  | 식전구(정) |  |
| 2023년 12월 31일 | 3   | -    | -      |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 관계              | 상호/이름   | 구분      | 기간              | 사업내용                                |
|-----------------|---------|---------|-----------------|-------------------------------------|
| 특수관계인<br>(사내이사) | 우마카/박진형 | 다른 가맹본부 | 2022.1 ~ 2022.4 | 우마카(등록번호: 20220026)라는<br>영업표지의 가맹사업 |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등록 및 등록신청<br>여부(일자) |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 소유자<br>(등록신청자) | 존속기간<br>만료일 |
|-------|---------|---------------------|-------------------|----------------|-------------|
| 우마카   | 당사가 허락한 | 2017.12.6 출원        | 출원 제4020170156260 | 박성철            | 2020.2.7    |
| (상표권) | 상품, 용역  | 2019.2.7 등록         | 등록 제40-1443630    | 195            | 2029.2.7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田. 가맹본부의 우마카 가맹사업 현황

1. 우마카를 시작한 날 : 2022년 1월 22일

## 2. 우마카 연혁

|           | 영업표지 | 대표자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우마카       | 우마카  | 박진형 | 2022.1 ~ 2022.4 |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9로 31-7, 102호 |
| (주)엠티씨컴퍼니 | 우마카  | 박성철 | 2022.4 ~ 현재     |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15, 2층   |

#### 3. 우마카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  |
|-------|-----|-----------|--|--|--|--|
| 우마카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  |
| T-1/1 | 한식  | 소고기       |  |  |  |  |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우마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지역 |    | 2021.12.31 |      |    | 2022.12.31 |      |    | 2023.12.31 |      |  |
|----|----|------------|------|----|------------|------|----|------------|------|--|
| 시작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 전체 | 1  | -          | 1    | 8  | 8          | -    | 7  | 7          | -    |  |
| 서울 | -  | -          | -    | -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2  | 2          | -    | 1  | 1          | -    |  |
| 광주 | -  |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3  | 3          | -    | 3  | 3          | -    |  |
| 강원 | -  | -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    |  |
| 충남 | 1  | -          | 1    | 3  | 3          | -    | 3  | 3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우마카 가맹점 수

(단위: 개)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21 | -  | -     | -     | _     | -     | -  |
| 2022 | -  | 8     | -     | -     | -     | 8  |
| 2023 | 8  | 1     | 2     | -     | -     | 7  |

## 6. 우마카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우마카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 정기준

우마카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                |              | 2023년 가맹                  | 점사업자의   | 연간 평균                     | 매출액     |                           |       |
|----|----------------|--------------|---------------------------|---------|---------------------------|---------|---------------------------|-------|
| 지역 | 2023년말<br>가맹점수 | 연간 평균 매출액    |                           |         | 연간 평균<br>매출액(상한)          |         | 평균<br>하한)                 | 비고    |
|    | 16aT           | 연간 평균<br>매출액 | 면적<br>3.3m <sup>2</sup> 당 | 상한      | 면적<br>3.3m <sup>2</sup> 당 | 하한      | 면적<br>3.3m <sup>2</sup> 당 |       |
| 전체 | 7              | 629,597      | 24,744                    | 777,862 | 37,159                    | 513,506 | 15,946                    | 6곳    |
| 서울 | -              | 해당없음         |                           |         |                           |         |                           |       |
| 부산 | -              | 해당없음         |                           |         |                           |         |                           |       |
| 대구 | -              | 해당없음         |                           |         |                           |         |                           |       |
| 인천 | 1              | 해당없음         |                           |         |                           |         |                           | 5곳 미만 |
| 광주 | -              | 해당없음         |                           |         |                           |         |                           |       |
| 대전 | -              | 해당없음         |                           |         |                           |         |                           |       |
| 울산 | -              | 해당없음         |                           |         |                           |         |                           |       |
| 세종 | -              | 해당없음         |                           |         |                           |         |                           |       |
| 경기 | 3              | 해당없음         |                           |         |                           |         |                           | 5곳 미만 |
| 강원 | -              | 해당없음         |                           |         |                           |         |                           |       |
| 충북 | -              | 해당없음         |                           |         |                           |         |                           |       |
| 충남 | 3              | 해당없음         |                           |         |                           |         |                           | 5곳 미만 |
| 전북 | -              | 해당없음         |                           |         |                           |         |                           |       |
| 전남 | -              | 해당없음         |                           |         |                           |         |                           |       |
| 경북 | -              | 해당없음         |                           |         |                           |         |                           |       |
| 경남 | -              | 해당없음         |                           |         |                           |         |                           |       |
| 제주 | -              | 해당없음         |                           |         |                           |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

한 것입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이하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은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7개가 아닌 실제 6개 가맹점의 연간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 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본부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우마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우마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3 | 7          | 19개월(1년7개월)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우마카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우마카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 상호 | 담당 지점 또는 부서 | 주소             | 전화번호         |
|---------|-------------|----------------|--------------|
| 신한은행    | 서산금융센터      | 충남 서산시 고운로 168 | 041)669-5600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하나은행에 계약체결일에 예치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하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우마카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하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가맹금예치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우마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보증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기타 비용  |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 예치하지 않음  |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총계    | 16,500 |       |             |                      |                            |
| 가입비   | 11,000 | 계약체결일 | 영업 개시 이전 해지 | 가맹점 모집을 위해<br>소요된 비용 |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br>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
| 오픈교육비 | 3,300  | 계약체결일 | 교육 시작 이전 해지 | 오픈 교육 진행             |                            |
| 오픈지원비 | 2,200  | 계약체결일 | 오픈 업무 이전 해지 | 오픈 업무 진행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
| 계약이행보증금 | 5,000 | 계약체결일 | 가맹금 미지급, 대금 채무, 손해배상액의 지급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
| 합계               | 21,500 |
| 가입비              | 11,000 |
| 오픈교육비            | 3,300  |
| 오픈지원비            | 2,200  |
|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 5,0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면적<br>33㎡당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비고      |
|-------------|------|--------|--------------|-----------------|-----------|---------|
| 총계          |      | 90,200 |              |                 |           |         |
| 필수설비(정착물)   | 가맹본부 | 13,200 | 660          | 발주시             | 설치 전 계약취소 | 66m² 기준 |
| 닥트          | 가맹본부 | 12,100 |              | 발주시             | 설치 전 계약취소 |         |
| 간판 및 사인물    | 가맹본부 | 2,750  |              | 발주 시            | 제작 전 계약취소 |         |
| 인테리어        | 가맹본부 | 44,000 | 2,200        | 공사계약 시          | 공사 전 계약취소 | 66m² 기준 |
| 인테리어<br>감리비 | 가맹본부 | 7,700  |              | 공사계약 시          | 공사 전 계약취소 |         |
| 의자          | 가맹본부 | 2,750  |              | 영업 개시<br>15일 이전 | 물품 미공급 시  | 66m² 기준 |
| 초도물품 비용     | 가맹본부 | 7,700  |              | 영업 개시<br>15일 이전 | 물품 미공급 시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 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br>→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br>→ 최적의 입지 도출<br>→ 가맹본부와 최종 협의 및 승인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오픈교육비 납입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 종업원    | 가맹점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만18세 이상일 것          |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우마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br>없는 사유 | 비고                 |
|-------------------|------|--------|-------------|------|----------------|--------------------|
| 로열티               | 협력업체 | 월매출 3% | 매월 10일      |      | 기간 경과          |                    |
| POS 사용료           | 협력업체 | 월 30   |             |      |                |                    |
| 광고분담금             |      | 해당없음   |             |      |                |                    |
| 점포환경<br>개선비용      |      | 해당없음   |             |      |                | 점포환경개선을<br>요구하지 않음 |
| 모바일 상품권<br>수수료분담금 |      | 해당없음   |             |      |                |                    |
| 지연이자              | 협력업체 | 연20%   | 지급하는<br>날까지 |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_ | 22 | 131 |
|--|---|----|-----|
|  |   |    |     |
|  |   |    |     |
|  |   |    |     |

내용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 |
|---------------------------------|---|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

당사는 가맹점에 물품을 직접 공급하지 않아 발생되는 차액가맹금이 없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독 항목 | 내 용                    | 시기   | 비고                |
|-------|------------------------|------|-------------------|
| 재고관리  | 실제 재고수량을 조사            | 년 1회 | 문의 : 041-681-8330 |
| 회계처리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 년 1회 | 문의 : 041-681-8330 |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재가맹비 | 5,500 | 계약갱신일 | 재가맹계약 포기 | 재가맹계약 진행    |    |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 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우마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 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우마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우마카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우마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우마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하는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 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
| 소고기 구이류, 주류, 음료,<br>사이드메뉴(분식류, 케밥,각종 구이) |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br>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구두 경고<br>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br>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상대방(고객) | 상품 • 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
| 미성년자      | 주류       |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br>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구두 경고<br>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br>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 용역명 | 권장가격(단위: 원) | 가격 통보 방법 | 비고 |
|----------|-------------|----------|----|
| 와규토시살    | 25,000      |          |    |
| 와규안창살    | 27,000      |          |    |
| 와규살치살    | 29,000      |          |    |
| 와규꽃갈비살   | 31,000      | 홈페이지 게시  |    |
| 한우우설     | 23,000      |          |    |
| 우마카 Aset | 85,000      |          |    |
| 우마카 Bset | 87,000      |          |    |

| 우마카하이볼set      | 88,000  |
|----------------|---------|
| 스페셜set         | 91,000  |
| 소주             | 4,000   |
| 제주한라산          | 5,000   |
| 카스/테라          | 5,000   |
| 맥스생맥주500ml     | 5,000   |
| 산토리하이볼330ml    | 7,000   |
| 기린이찌방          | 6,000   |
| 아사히            | 7,000   |
| 산토리프리미엄        | 8,000   |
| 위스키&와인&사케콜키지   | 5,000   |
| 콜라/사이다         | 2,000   |
| 라무네            | 3,500   |
| 진저엘            | 2,000   |
| 공기밥            | 1,000   |
| 후리가케밥          | 2,000   |
| 소고기신라면         | 5,000   |
| 구워먹는 치즈 3pcs   | 6,000   |
| 구워먹는 치즈 5pcs   | 8,000   |
| 구워먹는 명란구이      | 9,000   |
| 도쿠리사케 330ml    | 8,000   |
| 나마죠죠 300ml     | 15,000  |
| 화요25 375ml     | 22,000  |
| 월계관준마이 750ml   | 31,000  |
| 간빠레오또상 900ml   | 29,000  |
| 일품진로 375ml     | 33,000  |
| 준마이 다이긴죠 720ml | 80,000  |
| 쿠보다센쥬 720ml    | 85,000  |
| 호린준마이 다이긴죠 720 | 130,000 |
| 산토리위스키         | 80,000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중절인 입중 급기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 소고기전문점    | 우마카         | 해당 없음 |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                                     | 설정방법        |
|---|-------------|
|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1Km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 다.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공항, 호텔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크시에 중립시역 표시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 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ol> <li>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br/>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li> <li>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br/>변동되는 경우</li> <li>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br/>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li> <li>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br/>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br/>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br>서면으로 통지하고<br>30일 이내에 동의<br>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br>경우 15일 이내에<br>영업지역 재조정 완료<br>신규 가맹점 입점<br>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 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가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우마카'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우마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 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 연도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         | 온라인 판매 | 판매 매출액 비중 |  |
|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
| 2023        | 100%                  | 0%      | 0%     | 0%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 | 100%         | 0%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우마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 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 D-180 ~ D-90 |
| 예→②, 아니오→⑦                                      | D-100 ~ D-3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 D-180 ~ D-90 |
| 예→④, 아니오→③                                      | D-100 ~ D-3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 D-180 ~ D-90 |
| 예→⑤, 아니오→A                                      | D-100 1 D-3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 ①+15일 이내     |
| 예→B, 아니오→A                                      | (I)+13일 어테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              |
| 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              |
| 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 D-180 ~ D-90 |
| 예→B, 아니오→®                                      | D-100 ~ 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 D-60일 이전     |
| 예→E, 아니오→A                                      | D-00 글 역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 |              |
| 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 | _            |
| 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br>계약조문 |
|---|------------|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38조1항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br>경우      | 38조1항      |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br>한 경우   | 38조1항      |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br>지 않은 경우 | 38조1항      |
| 우마카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38조1항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br>계약조문 |
|--|------------|
|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 31조1항      |
|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31조1항      |
|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br>경우  | 31조1항      |
| 품질관리기준을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31조1항      |
|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31조1항      |
|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1조1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31조1항      |
|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br>않는 경우 | 31조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 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야 합니다.

|   |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관련<br>계약조문 |
|---|--|------------|
| ١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39조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39조2항      |
|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br>된 경우  | 39조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39조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br>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br>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br>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9조2항      |

| 가당 | 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       |
|----|---|-------|
| 날! | 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       |
| 다  | 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 39조2항 |
| 1년 | <sup>년</sup>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 |       |
| 될  |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가당 | 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39조2항 |
| 가당 | 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 ᄭᅎᇧᅌᆝ |
| 형E | 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39조2항 |
| 가당 | 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39조2항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계약의무 불이행이나 가맹계약 유지가 어려운 객관적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 의한 해지 사유  | 관련<br>계약조문 |
|---|------------|
| 가맹본부가 약정한 원,부재료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지 않거나<br>지체하는 경우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br>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 39조3항      |
|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정상태가 객관적으로 악화됨에 따라<br>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합리적,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br>해지할 수 있다.<br>1. 가맹본부가 파산한 경우<br>2.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br>3. 가맹본부가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행정적 처분<br>을 당한 경우<br>4. 천재지변으로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 | 39조4항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금일천만원(₩10,000,000)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
|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
| → 수정계약서(안) 작성       | 동의 여부 회신                      |
|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

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br>가맹점 운영 기준을<br>준수할 것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문의 :<br>041-681-8330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기타 의무사항       |  |  |  |
|------|-----------|---------|------------------|---------------|--|--|--|
| 상속   | 상속인 사후통지시 | 모든 권리의무 | 상속인 명의의 가맹계약서 작성 |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  |  |  |
| 대리행사 | 불가능       |         |                  |               |  |  |  |
| 업무위탁 | 불가능       |         |                  |               |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우마카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고                   |
|------------|--|----------------------|
| 소고기전문점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br>→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br>→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문의 :<br>041-681-8330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우마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
|---------------|----------|-------------------|--|--|--|
| 오후 5시 ~ 오전 2시 | 월 25일 이상 | 문의 : 041-681-8330 |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
| 3명 이상   | 직접 근무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 • 감독 항목  | 감독 절차  | 빈도 및 시기 |
|-------------|--|---------|
| 가맹점 위생      | 담당자 가맹점 방문 → 가맹점 위생상태 확인<br>→ 현장 시정권고 및 조치 → 완료          | 비정기     |
| 고객서비스       | 담당자 가맹점 방문 → 모의 구매(주문) → 고객서비스 확인<br>→ 현장 시정권고 및 조치 → 완료 | 비정기     |
| 표준화 및 품질 관리 | 담당자 가맹점 방문 → 표준화 및 품질 확인<br>→ 현장 시정권고 및 조치 → 완료          | 비정기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상태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우마카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광고<br>성격           | 부 년<br>본사부담 | 남비율<br>가맹점부담 | 분담 절차   | 비고 |
|-------------|--------------------|-------------|--------------|---|----|
| 광고<br>전체 행사 | 브랜드<br>가맹점<br>모집광고 | 전액 부담       | 없음           |   |    |
| 판촉행사        | 할인행사               | 요           | 전액부담         |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    |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판촉 활동의 내용을 당사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 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와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합계          |   | 65일 내외 |              |
| 가맹희망자<br>문의 | - 전화문의 접수<br>-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              |
| 가맹 상담       | <ul><li>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li><li>가맹희망자 상담</li></ul> | 1일     |              |
| 숙려기간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서 검토                                   | 14일    | IV.가맹점사업자의부담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1일     | 1.영업개시 이전의   |
| 가맹금 예치      | - 가맹금 예치  | 1일     | 부담 참조        |
| 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3일     |              |
|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1일     |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40일    |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3일     |              |
| 가맹점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요구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을 시행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점포환경개선<br>사유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br>-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br>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
| 가맹본부 부담<br>비용항목 | - 간판교체 비용<br>-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br>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br>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 가맹본부 부담<br>비용비율 |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br>-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 지급절차            | <ul> <li>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li> <li>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li> <li>&lt;분할지급 시 절차&gt;</li> </ul> |
|                 |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br>→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br>(1차: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br>총 부담액의 30%, 3차: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비용부담<br>제외사유    |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br>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br>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촉진행사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별도의 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별도의 경영상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우마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
| 오픈교육 | 브랜드 기본 이해,<br>운영실무, 노하우 등 | 집단 강의<br>실습교육 |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필수 교육 |
| 특별교육 | 가맹점사업자 요청 교육              | 개별 협의         |                  | 선택 교육 |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우마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비고        |
|------|---------|--------------------|-----------|
| 오픈교육 | 5일 20시간 | 3,300              | 최초가맹금에 포함 |
| 특별교육 | 개별 협의   | 개별 협의              |           |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오픈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오픈 승인 지연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없음.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해당없음.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해당없음.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41-681-833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 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우마카 인근가맹점현황문서

※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2항에 의거 인근 가맹점의 현황을 제공합니다. 귀하가 장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10곳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딩 | · 광역지방자치단처 |     | 기준일 | 20 년 월 |
|----|------------|-----|-----|--------|
| no | 가맹점명칭      | 소재지 |     | 전화번호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확인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 법률에 | 따라 기 | ㅏ맹희망자가  | · 내용을 | 충분히  | 검토히  | 나고 판단함 | 할 수 | 있도특 | 록 가 |
|-----------------|-----|------|---------|-------|------|------|--------|-----|-----|-----|
| 맹계약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 등록된 | 정보공  | 개서, 인근기 | ·맹점현횡 | 문서를  | 제공합  | 합니다.   |     |     |     |
| 가맹희망자는 제공받은 문서의 | 내용에 | 대하여  | 제3자에게   | 누설하거  | 나 무딘 | 으로 - | 유출하지   | 않을  | 것을  | 서약  |
| 합니다.            |     |      |         |       |      |      |        |     |     |     |

| $\triangleright$ | 정보저      | I고 | 화이 |
|------------------|----------|----|----|
| 1/               | $-0\pm0$ |    |    |

정보제공 일시 : 년 월 일

정보제공 장소 :

### ▷ 가맹본부정보

가 맹 본 부 : ㈜엠티씨컴퍼니

대상 브랜드 : 우마카

최초 등록일 : 2022년 1월 12일

등 록 번 호 : 20220026

최종 등록일 : 2023년 6월 22일

#### ▷ 가맹희망자정보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가맹희망자 : \_\_\_\_\_(인)